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회계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6월 21일

##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103호

###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회계 규정 일부 개정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회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4조 제3항 예산편성의 기준은 “재단에서 정한 제규정 이외의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용한다” 를 “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「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」 및 「화성시 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」을 따르고,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을 준용한다” 로 개정

제138조 중 “「화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 을 “「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 으로 개정

제139조 중 “「화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 을 “「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 으로 개정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